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최근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학생이 증가(2016년 99,186명→2020년 147,378명)하고 있으나, 일부 학교에서 입학 거부 사례 등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국내학교 편입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

이에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한 입학·전학 및 편입학 절차와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,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유도하고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다문화학생 등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입학·전학 및 편입학 절차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(안 제 89조2 제2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문화학생과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9조의2(귀국학생 등의 입학 · 전학 및 편입학) (생 략)	제89조의2(귀국학생 등의 입학 · 전학 및 편입학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다문화학생과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8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 ·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.</u>